[양식 제30호]

등록 부 정 정 신 청 서 (역 일)

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 첫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● ● 대한법률구조공단

·	`	_		_				0	r	十 ^	기기 마엽	44.		
① 사 건 본 인		ᅿᇚ	한글	(성)	/ (명)					3	주민등록 헌 호		_	
		성 명	한자	(성)	/ (명)					ļ	헌 호			
	드	·록기준지]							'				
		주 소												
②정정사항														
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					년	월		ē.	Ī	법원	명			
④기타사항											1			
⑤ 신 청 인	성 명			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−										
	자 격		[]본	1보인 ②법정대리인 ③소 제기자 ④기타(자격:)										
	주 소								전	· 한		이메일		
⑥제출약	인 성명			주민등					등록번호 -					

작 성 방 법

- ①란: ③, ④,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"별지와 같음"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②란: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'주문'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"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"이라고 기재합니다.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 :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⑥란: 제출자(신청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(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).
- 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-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*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	성 명		/ (명)	주민등록 번 호	www.k
사	등록기준지	한자 🖄	/ (명)	빈 오	
건 본	주 소				
인 인	정정사항				
	성 명	한글 엥	/ (¹ / ₀)	주민등록 번 호	_
사		한자 (성)	/ (명)	먼 오	
건	등록기준지 주 소				
본 인	1				
3	정정사항				
))	한글 (성)	/ (명)	주민등록	
λl	성 명	한자 (성)	/ (명)	주민등록 번 호	_
사 건	등록기준지				
본	주 소				
인	정정사항				
)))	한글 (성)	/ (명)	주민등록	
<i>x</i> 1	성 명	한자 (성)	/ (명)	주민등록 번 호	_
사 건	등록기준지			1	
건 본 인	주 소				
인	정정사항				
)] —]	한글 (성)	/ (명)	주민등록	
λl	성 명	한자 🖄	/ (명)	주민등록 번 호	_
사 건	등록기준지	'		1	
건 본 인	주 소				
인	정정사항				